

대여금고 약관 전·후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p>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대여금고 거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으며, 대여금고라 함은 은행에 설비된 금고에 다수의 보관함을 설치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신청자 중 <u>당행</u>이 인정하는 자(이하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그 보관함을 이용해서 목적물을 스스로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p> <p>제2조 보관대상 ~ 제3조 계약기간 (내용 생략)</p> <p>제4조 인감·서명신고 대여금고 거래시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며, 이때 임차인은 거래에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u>대리인도</u>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을 <u>본인과 함께 내점하여</u> 신고하여야 합니다.</p> <p>제5조 열쇠 또는 카드의 보관 및 사용 ① 대여금고 열쇠(카드포함, <u>이하 같다</u>)는 임차인용, 은행용 및 예비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② 예비용 열쇠는 은행직원의 입회하에 봉투에 넣고 임차인이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으로 봉인하여 은행에 보관합니다. ③ 은행이 화재·천재지변,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과 금고수리, 기타 은행사정에 따라 부득이 대여금고를 열어야 할 때에는 예비용 열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금고의 수리와 변경 등 은행사정에 의해 열람이 필요한 경우, 서면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고, 14일 이내에 <u>열람에 동의</u>하는 의사표시가 <u>없는</u> 경우 열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p>	<p>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대여금고 거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으며, 대여금고 <u>거래</u>라 함은 은행에 설비된 금고에 다수의 보관함을 설치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신청자 중 <u>은행</u>이 인정하는 자(이하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그 보관함을 이용해서 목적물을 스스로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p> <p>제2조 보관대상 ~ 제3조 계약기간 (현행과 같음)</p> <p>제4조 인감·서명신고 대여금고 거래시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며, 이때 임차인은 거래에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을 <u>은행에</u>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u>임차인 본인</u>과 <u>대리인이 함께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리인이</u>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p> <p>제5조 열쇠 또는 카드의 보관 및 사용 ① 대여금고 열쇠(카드포함, <u>이하 "열쇠"</u>)는 임차인용, 은행용 및 예비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② 예비용 열쇠는 은행직원의 입회 하에 봉투에 넣고 임차인이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으로 봉인하여 은행에 보관합니다. ③ 은행이 화재·천재지변,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과 금고수리, 기타 은행사정에 따라 부득이 대여금고를 열어야 할 때에는 예비용 열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금고의 수리와 변경 등 은행사정에 의해 열람이 필요한 경우, <u>은행은 임차인에게 금고열람 예정사실과 그 사유를 서면, 전화, 문자전송 등 방법(이하 "서면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u></p>	<p>자구 수정</p> <p>자구 수정</p> <p>자구 수정</p> <p>자구 수정</p>

현 행	개 정	비 고
<p>다만, 임차인 에게 사전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은행이 임의로 열람하고 이후에 임차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p> <p>⑤ 임차인이 사용중인 대여금고 열쇠 또는 카드의 분실, 도난, 기타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사고 신고일 로부터 1주일 이 경과한 후에도 열쇠가 발견되지 않을 때에는 임차인 입회 하에 은행 보관 예비용 열쇠로 금고를 개문하고 새로운 열쇠로 교체한 후 재이용 가능토록 합니다. 열쇠 조제비용은 고객부담으로 합니다.</p> <p>제6조 대여금고 이용</p> <p>① 대여금고를 열 때는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으로 이용절차를 마치고 임차인용 열쇠(또는 카드)를 사용합니다.</p> <p>② 임차인은 대여금고를 이용한 후 금고가 완전히 잠겼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임차인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이 대여금고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p>③ 은행은 임차인의 요청이나 사망, 해산이 있을 때에는 대여금고의 이용을 중지 시킬 수 있습니다.</p> <p>제7조 이용시간</p> <p>대여금고는 은행의 영업시간 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p> <p>제8조 금고의 임의열람</p> <p>대여금고는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p>	<p>에 안내하고, 안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열람을 거절하는 의사표시가 은행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열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p> <p>다만, 임차인에게 사전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은행이 금고를 열람한 이후에 임차인에게 <u>금고열람 사실과 그 사유를 서면 등의 방법을 통해</u> 안내할 수 있습니다.</p> <p>⑤ 임차인이 사용중인 대여금고 열쇠 또는 카드의 분실, 도난, 기타 사고신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임차인용 열쇠가 발견되지 않을 때에는 임차인의 입회 하에 은행에 보관한 예비용 열쇠로 금고를 개문하고, 새로운 열쇠로 교체한 후 해당 금고를 재이용 가능토록 합니다. 이 경우, 신규 열쇠의 제작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합니다.</p> <p>제6조 대여금고 이용</p> <p>① 대여금고를 열 때는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으로 이용절차를 마치고 임차인용 열쇠(또는 카드)를 사용합니다.</p> <p>② 임차인은 대여금고를 이용한 후 금고가 완전히 잠겼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임차인에게 발생한 <u>제한 손해에 대하여</u> 은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이 대여금고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p>③ 은행은 임차인의 요청이나 사망, 해산이 있을 때에는 대여금고의 이용을 중지 시킬 수 있습니다.</p> <p>제7조 이용시간</p> <p>대여금고는 은행의 영업시간 <u>중에만</u> 이용할 수 있습니다.</p> <p>제8조 금고의 임의열람</p> <p>대여금고는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아</p>	<p>자구 수정</p> <p>자구 수정</p> <p>자구 수정</p> <p>자구 수정</p>

현 행	개 정	비 고
<p>에서 정한 아래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요청 또는 동의를 없더라도 금고를 임의로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임차인에게 열람사실을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하기로 합니다.</p> <p>가. 화재, 천재지변 등 비상시의 경우 나. 보관물에 대한 법원의 제출명령 및 법관이 발부한 수색영장이 있는 경우</p> <p>제9조 보관물의 임의처분</p> <p>① <u>계약기간이 끝나고 1년이 지날 때까지 임차인이 계약을 다시 하지 않을 때, 은행은 임차인에게 제9조 4항의 방법을 통해 사전통지하고 통지(통지일 기준) 후 1개월내 조치가 없을 경우 보관물품을 임의로 꺼내어 따로 보관 할 수 있으며,</u></p> <p>부득이 처분해야 할 때는 보관물품을 공탁, 경매 또는 은행의 규정에 의한 공매 등 물품 처분방법에 따라 처분하되 보다 유리한 가격이 기대될 때는 은행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 곤란한 물품은 은행 임의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p> <p>② <u>은행이 보관물품의 임의처분 후 금액이 남는 경우 은행은 남은 금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u></p> <p>③ <u>제①항에 비용은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u></p> <p>④ <u>은행은 임차인이 신고한 주소, 전화번호 등으로 서면(또는 우선) 통지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u></p>	<p>래 각 항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요청 또는 동의를 없더라도 은행이 금고를 임의로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에게 열람사실 및 사유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p> <p>가. 화재, 천재지변 등 비상시의 경우 나. 보관물에 대한 법원의 제출명령 및 법관이 발부한 <u>압수</u> 수색영장이 있는 경우</p> <p>제9조 보관물의 임의처분</p> <p>① <u>본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임차인이 계약을 다시 하지 아니하고 보관물품을 미 회수한 경우, 은행은 임차인에게 본조 제5항의 방법으로 보관물의 임의처분 예정 사실을 사전통지하고, 통지(통지일 기준) 후 1개월 내 임차인의 조치가 없을 시에는 보관물품을 대여금고에서 반출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 할 수 있습니다.</u></p> <p>② <u>은행은 전①항의 보관물품을 부득이 처분해야 할 경우, 이를 공탁, 경매 또는 은행의 규정에 의한 공매 등 방법으로 처분 하되, 그러한 방법보다 유리한 가격이 기대될 때는 은행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 곤란한 물품은 은행 임의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u></p> <p>③ <u>은행이 보관물품의 임의처분을 통하여 취득한 금원은 본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채무(수수료, 임의처분비용 등)를 우선 공제하고, 은행은 남은 금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u></p> <p>④ <u>본 조에 따른 임의처분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합니다.</u></p> <p>⑤ <u>은행은 임차인이 신고한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에 따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난 시점에 해당 통지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u></p>	<p>자구 수정</p> <p>항 추가 및 자구 수정</p> <p>항 체하 및 자구 수정</p> <p>항 체하 및 자구 수정</p>

현 행	개 정	비 고
<p>제10조 보증금 및 수수료</p> <p>① <u>대여금고 거래를 시작할 때는 은행이 정한 대여금고 보증금을 내야하며, 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습니다.</u></p> <p>② <u>제①항의 보증금의 대여금고 거래가 끝난 후 임차인이 내야 할 대여금고 관련 채무를 변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u></p> <p>③ 임차인은 대여금고 거래를 시작할 때 또는 계약을 다시 할 때 보증금 외에 <u>은행이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u></p> <p>제11조 부가가치세 징수 임차인은 대여금고 수수료를 납부할 때 수수료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 대여금고 이용수수료 X 10%</p> <p>제12조 거래해지사유</p> <p>① 은행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차인이 해지를 신청한 때 2. 임차인이 사망한 때 단, 상속절차를 거쳐 납부된 수수료만큼의 기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해산 또는 파산한 때 4. 임차인이 은행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계약기간이 끝난 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계약을 다시 하지 않은 때 6. 은행이 대여금고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p>② 은행이 <u>제①항 제4호, 5호 및 6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할</u></p>	<p>제10조 보증금 및 수수료</p> <p>① <u>임차인은 대여금고 이용 신청 시 약정한 대여금고 보증금을 은행에 지급하여야 하고, 거래종료 시 보증금 잔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습니다.</u></p> <p>② <u>은행은 대여금고 거래가 끝난 후 임차인이 임차인용 열쇠를 은행에 반납하기까지 발생한 임차인의 대여금고 관련 채무를 전항의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u></p> <p>③ 임차인은 대여금고 거래를 시작할 때 또는 계약을 다시 할 때 보증금 외에 <u>약정한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하여야 합니다.</u></p> <p>제11조 부가가치세 징수 임차인은 대여금고 수수료를 납부할 때 수수료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 대여금고 이용수수료 X 10%</p> <p>제12조 거래해지사유</p> <p>① 은행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차인이 해지를 신청한 때 2. 임차인이 사망한 때 단, 상속절차를 거쳐 납부된 수수료만큼의 기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해산 또는 파산한 때 4. 임차인이 은행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u>(삭제)</u> 6. <u>기타 임차인의 계약위반 등</u> 은행이 대여금고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p>② 은행이 <u>전12조 제①항 제4호, 제5호의 사유로 본 계약을 해</u></p>	<p>자구 수정</p> <p>자동연장 부존재</p> <p>자구 수정</p> <p>자구 수정</p>

현 행	개 정	비 고
<p>때는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은행은 해지일 전 영업일까지 임차인의 서면(또는 전화)에 의한 임차인의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p> <p>③ 거래 해지시 대여금고 이용 고객은 임차인용 이용열쇠를 은행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어려울 시(분실, 기타 사유 등)는 은행에 그 열쇠 변경(재발급)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p> <p>제13조 해지 때 수수료 계산</p> <p>① 임차인은 영업점에 고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 전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임차인이 기 납부한 수수료는 이미 경과한 기간을 월수로 계산하여 공제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이 경우 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계산합니다</p> <p>② 계약기간이 만료 후 해지할 때는 경과월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계산합니다.</p> <p>제14조 신고사항의 변경 등</p> <p>① 대여금고 열쇠나 신고인감을 분실, 도난, 손상하거나 신고한 사항이 바뀐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p> <p>② 임차인이 귀책사유로 대여금고 이용열쇠를 분실, 도난, 손상하여 열쇠 (카드포함)를 교체하였을 때 그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p> <p>제15조 대여·양도금지</p>	<p>지할 때는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은행이 통지한 해지일자 기준, 전 영업일까지 임차인의 서면 등의 방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계약의 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p> <p>③ 거래 해지 시 대여금고 이용 고객은 임차인용 이용열쇠를 은행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분실, 기타 사유 등) 임차인은 은행에 해당 대여금고의 열쇠 교체(재발급)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p> <p>제13조 해지 때 수수료 계산</p> <p>① 임차인은 대여금고 이용 신청 시 약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은행은 임차인이 기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해지 시를 기준으로 이미 경과한 기간을 월단위로 계산하여 산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이 경우 31일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계산합니다.</p> <p>② 계약기간의 만료 후 본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경과월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31일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계산합니다.</p> <p>제14조 신고사항의 변경 등</p> <p>① 대여금고 열쇠나 신고인감을 분실, 도난, 손상하거나 임차인이 은행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이를 즉시 은행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p> <p>②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대여금고 이용열쇠를 분실, 도난, 손상하여 열쇠 (카드포함)를 교체 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p> <p>제15조 대여·양도금지</p>	<p>자구 수정</p> <p>자구 수정</p> <p>자구 수정</p> <p>자구 수정</p> <p>자구 수정</p>

현 행	개 정	비 고
<p>대여금고의 이용권리는 <u>대여·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u></p> <p>제16조 면책</p> <p>① <u>신고인감 또는 서명을 육안으로 주의 깊게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임차인용 열쇠를 가진 자에게 대여금고를 열람하여 발생한 어떠한 사고는 은행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u></p> <p>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생긴 손해는 은행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p> <p>제17조 준용</p> <p>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p>	<p>대여금고의 이용에 관한 <u>임차인의 제반 권리는 타인에게 대여·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u></p> <p>제16조 면책</p> <p>① <u>은행이 임차인의 신고인감 또는 서명을 육안으로 주의 깊게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임차인용 열쇠를 가진 자에게 대여금고를 열람을 허락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은행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u></p> <p>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생긴 손해는 은행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p> <p>제17조 준용</p> <p>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p>	<p>자구 수정</p> <p>자구 수정</p>